

농 어 업 경 영 체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안이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 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11조~제11조의3, 제12조~제12조의3, 제13조~제13조의3, 제14조~제14조의3 신설)
- 나.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함(안 제11조의4, 제12조의4, 제13조의4, 제14조의4 신설)
- 다.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을 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 라. 과징금의 납부 및 통지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각 조합원(준조합원은 제외한다)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별 보유 중인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7.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영농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영농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각 조합원(준조합원은 제외한다)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7.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1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영어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

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을“(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3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임원”을 “출자자(주주) 및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 출자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출자(주식) 1좌(주)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보유 중인 출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
8.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제1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2제2

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 제목 “(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

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제14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2호 중 “임원”을 “출자자(주주) 및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 출자자가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출자(주식) 1좌(주)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보유 중인 출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
8.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제14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7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명칭,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어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5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매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실태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관리) ①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20조의3”을 “영 제21조의6”으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21조의2제3항”을 “영 제2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21조의5제1항”을 “영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의5제2항”을 “영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 정관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 다) 명부	1.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3. 창립총회의사록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각 조합원(준조합원은 제외한다)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명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7.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영농조합법인의 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

<신 설>

<신 설>

조의3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영농조합법인의 신고 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조합법	3.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 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각 조합원(준조합원은 제외한다)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7.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	--	---	--

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변경등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
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어조합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명
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어조합법
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영어조합법인의 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
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
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14호의

<신 설>

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2항에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
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영어조합법인의 해산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8
조의3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
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3제2항에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

<신 설>

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해 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영어조합법인의 신고 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신 설>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임원 명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출자자(주주) 및 임원 -----

3.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 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 3. ~ 5. (현행과 같음) 6. 각 출자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 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출자(주식) 1좌(주)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보유 중인 출 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 8.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 료 <삭 제> <삭 제>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의 총액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 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 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 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삭 제> <삭 제> <삭 제>
--	--	--	--	--

제19호서식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농업회사법인의 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농업회사법인의 해산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농업회사법인의 신고 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신 설>	<u>변경신고확인증</u> 3. <u>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u> ② <u>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u> ④ <u>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① <u>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임원 명부</u> 3. ~ 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u>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u>	② <u>영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u> 1. (현행과 같음) 2. <u>출자자(주주) 및 임원</u> ----- 3. ~ 5. (현행과 같음) 6. <u>각 출자자가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7. <u>출자(주식) 1좌(주)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보유 중인 출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u> 8. <u>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u> <삭 제>
---	--	--	--	--

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 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의 총액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 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어업회사법인 변경등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삭 제>

<삭 제>

<삭 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어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14조의2(어업회사법인의 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명칭, 임원 등 변경 시 총

<신 설>

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어업회사법인의 해산 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③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신 설>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어업회사법인의 신고 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④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 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9조의 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5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 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매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

<신 설>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실태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관리) ①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영 제21조의6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2조의2제3항---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2조의5제1항-----

-----.

② 영 제22조의5제2항-----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대표조합원)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주사업	농업의 경영(생산) [] 농산물 공동 출하·유통 [] 농산물 가공 [] 농산물 수출 [] 농작업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부대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 종자생산·종균배양 [] 농산물 구매·비축 []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생산분야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재배품목 및 축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임원	구분	성명	
출자규모	구분	출자자수(명)	출자액(원)	
	조합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좌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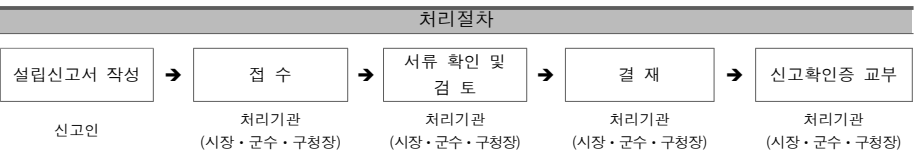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5. 각 조합원(준조합원을 제외)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7.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은 사업유형에 생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목적·사업은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3.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사유			

이름
이름
이름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해산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고번호 제 호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조합원 성명 :

3. 소 재 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내용			
사업내용	주사업	농업 경영(생산) [] 농산물 공동 출하·유통 [] 농산물 가공 [] 농산물 수출 [] 농작업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부대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 종자생산·종균배양 [] 농산물 구매·비축 []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생산분야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재배품목 및 축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임원	구분	성명	
출자규모	구분	출자자수(명)	출자액(원)
	조합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자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사유			

신고번호 제 호

영농조합법인

변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조합원 성명 :

3. 주 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 법인이 별첨과 같이 변경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변경내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신고번호 제 호

영농조합법인
해산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조합원 성명 :

3. 주 소 :

4. 해 산 사 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해산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150g/㎡]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조합원)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주사업	어업·양식업 경영(생산) [] 수산물 공동 출하·유통 []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수출 [] 어작업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부대사업	영어자재 생산·공급 [] 종자생산업 [] 수산물 구매·비축 [] 수산기자재의 임대·수리·보관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낚시터업 [] 유어장 운영업 [] 어촌어항재생사업 []	
		생산분야	연근해어업 [] 해면양식어업 [] 내수면양식어업 [] 원양어업 [] 소금생산업 [] 그 밖의 분야 []	
		생산품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임원	구분	성명	
출자 규모	구분	출자자수(명)	출자액(원)	
	조합원 (어업인, 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어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자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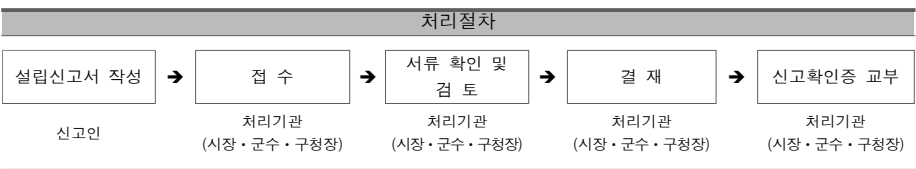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5. 각 조합원(준조합원을 제외)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7.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생산분야와 생산품종은 사업유형에 생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목적·사업은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3.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 설>

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 고 인 (대표조합원)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 출자 규모[] 출자 관련 사항[] 해산 사유[]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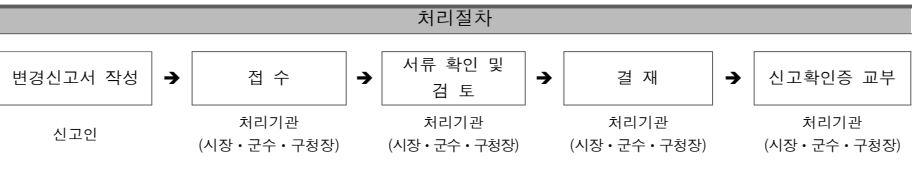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1.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사유			
첨부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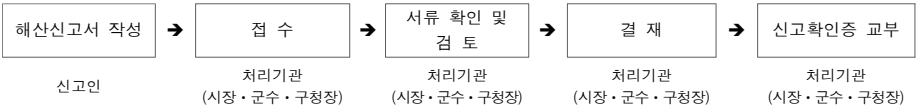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번호 제 호

영어조합법인
설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조합원 성명 :

3. 소 재 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뒤쪽)

신고내용			
사업내용	주사업	어업·양식업의 경영(생산) [] 수산물 공동 출하·유통 []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수출 [] 어작업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부대사업	영어자재 생산·공급 [] 종자생산업 [] 수산물 구매·비축 [] 수산물자재의 임대·수리·보관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낚시터업 [] 유어장 운영업 [] 어촌어항재생사업 []	
	생산분야	연근해어업 [] 해면양식어업 [] 내수면양식어업 [] 원양어업 [] 소금생산업 [] 그 밖의 분야 []	
	생산품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임원	구분	성명	
출자규모	구분	출자자수(명)	출자액(원)
	조합원 (어업인, 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어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자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사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 설>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영어조합법인 변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조합원 성명 :

3. 주 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 법인이
별첨과 같이 변경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



(뒤쪽)

변경내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 설>

신고번호 제 호

영어조합법인 해산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조합원 성명 :
3. 주 소 :
4. 해 산 사 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

주 소

전화번호

사원(이사))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주사업

농업 경영(생산)[] 농산물 공동 출하·유통[] 농산물 가공[] 농산물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부대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생산분야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임업[] 그 밖의 분야[]

재배품목 및 축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신고내용 (법 인)

임원

직위

성명

농업인 여부

구분

출자 주주(사원)의 수(명)

출자액(자본금)(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비농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자 (발행주식) 수 및 출자 1좌(1주)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출자자(주주) 및 임원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6. 각 출자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출자자(주주)별 인수하려는 출자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 8.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은 사업유형에 생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목적·사업은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3.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제

→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58 -

- 59 -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사원 (이사))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 출자 규모[] 출자 관련 사항[] 해산사유[]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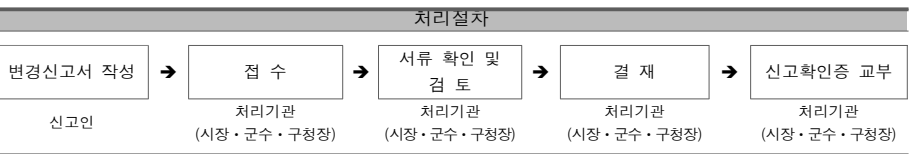
신고인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1.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청산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사유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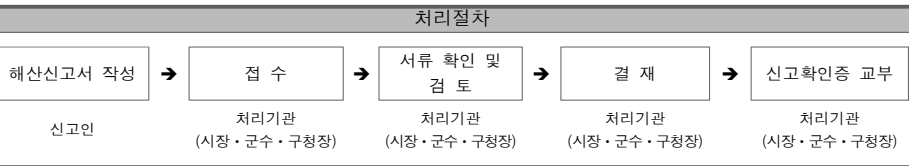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인(청산인)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번호 제 호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설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



신고내용			
사업내용	주사업	농업의 경영(생산)[] 농산물 공동 출하·유통[] 농산물 가공[] 농산물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부대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생산분야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임업[] 그 밖의 분야[]	
	재배품목 및 축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임원	구분	성명	
출자규모	구분	출자 주주(사원)의 수(명)	출자액(원)
	조합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자 (발행주식) 수 및 출자 1좌(1 주)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사유			

신고번호 제 호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변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자 성명 :

3. 주 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 법인이 별첨과 같이 변경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



변경내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신고번호 제 호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해산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자 성명 :

3. 주 소 :

4. 해 산 사 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

이 해산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66 -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사원(이사))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사업

어업·양식업 경영(생산)[] 수산물 공동 출하·유통[] 수산물 가공[] 수산물 수출[]

어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부대사업

영어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업[] 수산물 구매·비축[] 수산기자재의 임대·수리·보관[]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낚시터업[]

생 산 분 야

연근해어업[] 해면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 원양어업[] 소금생산업[] 그 밖의 분야[]

생 산 품 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신고내용

(법 인)

구분

성명

임원

구분

출자 주주(사원)의 수(명)

출자액(자본금)(원)

출자 규모

어업인,

생산자단체

비어업인

계

출자

총 출자좌

(발행주식) 수

- 67 -

관련 사항	및 출자 1좌(1주)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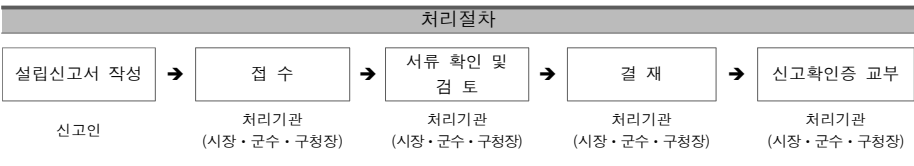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출자자(주주) 및 임원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상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6. 각 출자자가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출자(주식) 1좌(주)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인수하려는 출자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 6. 사원(주주)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상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생산분야와 생산품종은 사업유형에 생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목적·사업은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3.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 출자 규모[] 출자 관련 사항[] 해산사유[]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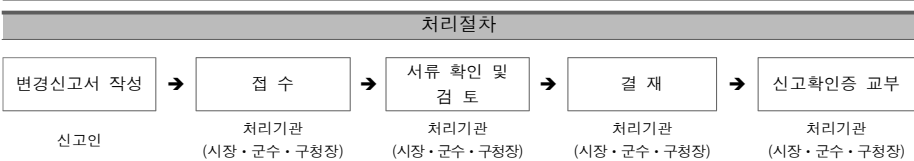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1.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사유			
첨부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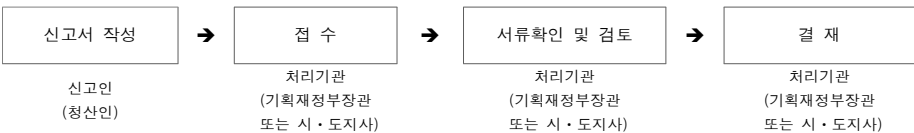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에 따른 부동산업 금지 의무 위반 여부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 해당 여부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

신고번호 제 호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설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뒤쪽)

신고내용			
사업내용	주사업	어업·양식업 경영(생산) [] 수산물 공동 출하·유통 []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수출 [] 어작업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부대사업	영어자재 생산·공급 [] 종자생산업 [] 수산물 구매·비축 [] 수산기자재의 임대·수리·보관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낚시터업 []	
	생산분야	연근해어업 [] 해면양식어업 [] 내수면양식어업 [] 원양어업 [] 소금생산업 [] 그 밖의 분야 []	
	생산품종		
목적·사업 (등기부 기재 예정 목적 및 사업)			
임원	구분	성명	
출자규모	구분	출자 주주(사원)의 수(명)	출자액(원)
	어업인, 생산자단체		
	비어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자 (발행주식) 수 및 출자 1좌 (1주)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사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 설>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변경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자 성명 :

3. 주 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 법인이 별첨과 같이 변경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



신고번호 제 호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해산 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

2. 대표자 성명 :

3. 주 소 :

4. 해 산 사 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74 -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낼 것을 알려드리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537